

동작구의회공고 제2016-1호

## 제257회 동작구의회(임시회) 집회공고

동작구의회 의원 전갑봉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57회 임시회의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
1. 집회일시 : 2016년 1월 25일(월) 10 : 00
2. 장 소 : 동작구의회 본회의장

2016년 1월 20일

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회장 유 태 철